#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252 발의연월일: 2021. 1. 3.

발 의 자:조명희·하영제·홍문표

김용판 • 박덕흠 • 성일종

김석기 · 김성원 · 추경호

황보승희 · 조경태 의원

(1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런데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의 행위를 기준으로 제한능력자의 상속 승인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에서 현행법상 상속숙려기간이 지나치게 짧고,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사실 또는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단순승인이 의제가 되어 제한능력자가 향후 과도한 상속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등 상속과 관련하여 제한능력자에 대한 보호가 제도적으로 미비하다는 점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상속숙려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법정단순승인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하여 상속 절 차에 있어서 제한능력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20조, 제1026조의2 및 제1027조).

법률 제 호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0조 중 "제1019조제1항의 기간은"을 "제10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기산(起算)한다"를 "6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로 한다.

제10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026조의2(제한능력자의 예외) ①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제1020조의 기간 내에 단순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 ② 제1항의 경우 법원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에 대하여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 목록의 제출 및 제1032조에 따른 공고를 명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한정승인에 관하여는 제1033조부터 제104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27조 중 "前條第3號"를 "제1026조제3호"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한능력자의 상속에 관한 적용례) 제1020조 및 제10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1020조(제한능력자의 승인·포 제1020조(제한능력자의 승인·포 기의 기간) 상속인이 제한능력 기의 기간) ------자인 경우에는 제1019조제1항 -----제1019조제1항 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에도 불구하고-----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6개월 내에 단순 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제1026조의2(제한능력자의 예외) <신 설> ①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 우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제1020조의 기간 내에 단순승 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 법원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에 대하여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 산 목록의 제출 및 제1032조에 따른 공고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한정승인에 관하여는 제1033조부터 제1040 第1027條(法定單純承認의 例外) 第1 相續人이 相續을 拋棄함으로 因하여 次順位 相續人이 相續 을 承認한 때에는 <u>前條第3號</u>의 事由는 相續의 承認으로 보지 아니한다.

	조끼	-지의	규정	을 준	용힌	<u>다.</u>	
第	1027	7條(法	定單	純承語	忍의	例外)	_
				제1	0262	전제3호	<u> </u>